

□ 日本 會社 分割法 施行의 意味¹⁾

- 최근 일본에서 기업 분할과 관련하여 ‘회사분할제도’ 및 ‘노동 계약 승계법’이 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임
- 이로써, 일본은 지주회사 규제 철폐(1997년), 주식교환 제도(1999년) 등과 함께 기업 재편에 관련된 제반 제도가 완비되어 장차 지주회사 설립 및 기업 분할을 통한 기업 재편 작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
- 특히 미즈호 금융 그룹이 금융지주회사 설립후 기업 분할 방식을 활용하여 금융 부문별로 특화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를 꾀할 전망이다

○ 주요 내용

- 회사 분할 관련 2가지 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됨²⁾
 - 기업의 조직 재편과 관련한 ‘회사 분할 제도’의 창설을 위한 상법 개정
 - 분할에 수반된 종업원 보호 등을 정하는 ‘노동 계약 승계법’ 제정
- 기업 재편 법제의 정비
 - 회사 분할 관련 2가지 법이 제정됨으로써 1997년 ‘지주회사 규제 철폐’, 1999년 ‘주식 교환 제도’의 도입과 함께 기업 재편과 관련된 제반 법제가 완비됨
 - 이로써 기업의 우량 부문의 독립이나 채산성 없는 부문의 정리 등 절차가 대폭 단축될 전망이며, 타사와의 사업통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
 - 회사분할제도는 미국이나 독일, 영국 등 구미 제국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본에서는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것임

○ 회사 분할 제도와 유용성

- 2가지 종류: 신설 분할, 흡수 분할
 - 회사분할제도에는 기업이 사업 부문을 나누어 신설회사에 인계하는 신설 분할과 기존의 다른 회사에 인계하는 흡수 분할 등 2종류가 있음

1) 이 글은 日本經濟新聞(2000년 6월 15일)의 관련 기사를 정리한 것임

2) 자민,공명,보수 등 여당 3당과 민주당, 참의원 클럽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, 성립되었음

- 신설 분할은 성장이 기대되는 우량 부문을 분리·독립시킬 경우, 흡수 분할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우량 부문의 흡수 등에 적용됨

- 달라질 제도 환경

- 기업의 사업 재편이 용이해지고 발전성 있는 사업 부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계는 유연한 경영 전략을 추진하기가 용이해질 것임
- 영업을 인계하는 회사의 주식을 원래 회사나 그 주주에 할당할 수 있어 주주의 동의를 얻기 쉬움
- 분할시 분할 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는 등 현행 제도보다 절차도 간소화됨
- 분할에 수반되는 자산의 이동이 적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생각할 수 있는 간이 분할 절차 등도 규정하고 있음
- 채무를 새로운 회사에 이전할 경우, 채권자에 통지하여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개별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
- 또한, 재판소 선임 검사역의 자산 조사도 불필요해짐에 따라 과거 검사의 종료 시기에 관한 기준이 불분명함으로써 회사의 설립 시기 결정이 어려웠던 문제점이 사라짐

- 노동 계약 승계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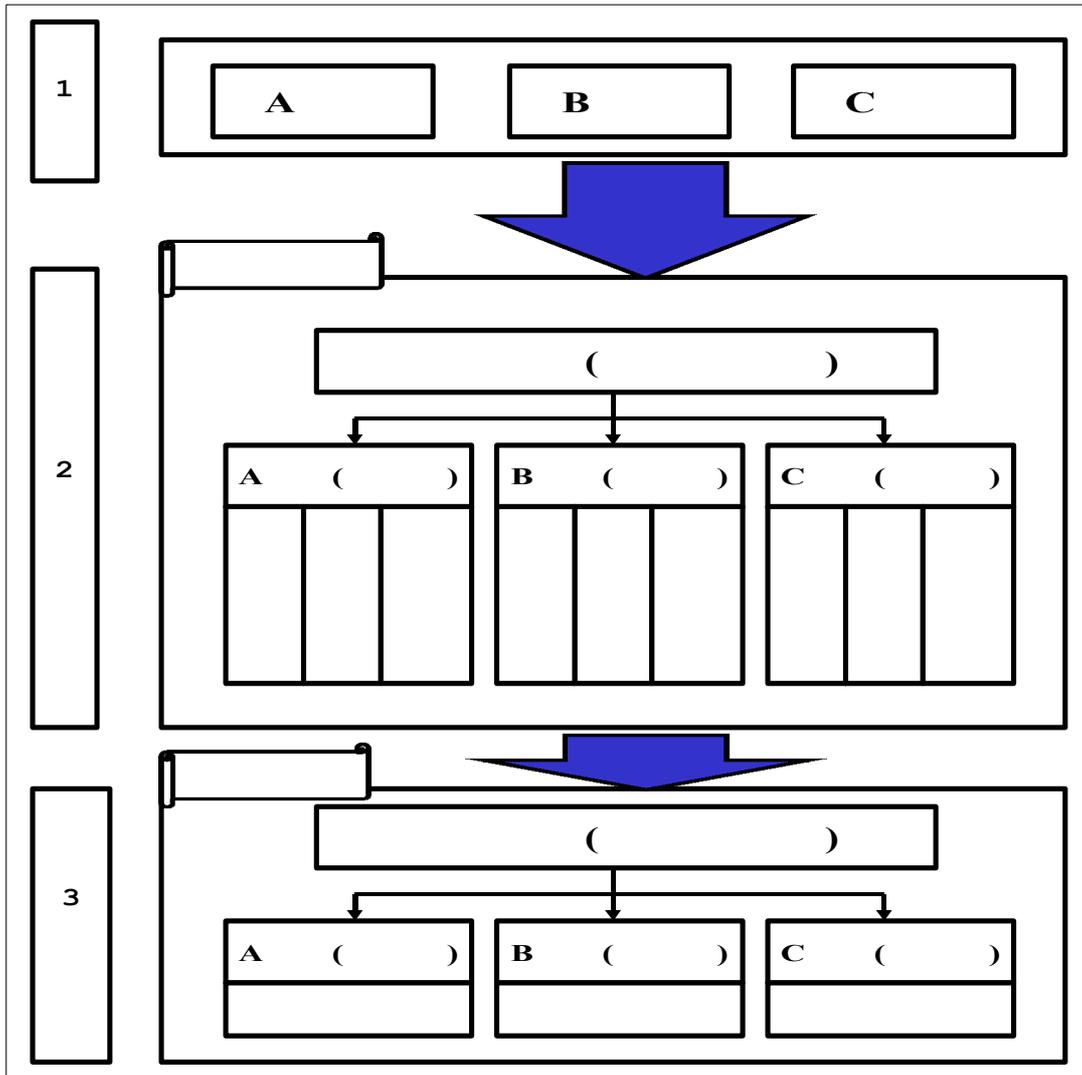
- 회사분할에 수반된 노동자의 보호 규정도 정비되어 회사측에 주주총회의 2주 전까지 노동자와 사전 협의하는 것도 의무화되어 있음
- 노동 계약 승계법은 노조와 관련되어 있는 노동협약을 새로운 회사에 인계할 것을 명시하였음
- 분리되는 부문의 종업원에게 事前 통지될 때에만 본인 동의 없이도 轉職되는데 분리 부문에 他 부문의 종업원을 이직시킬 경우 종업원의 轉職 승인이 있어야 가능함

- 미즈호 금융그룹의 활용 가능성

- 미즈호 금융그룹(日本興業銀行, 第一勸業銀行, 富士銀行)은 2000년 가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2002년 봄까지 부문별로 재편할 계획을 갖고 있음
- 이에 따라, 미즈호 그룹은 기업 분할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재편 작업이 빨라질 수 있어 경영의 효율화, 국제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
- 1단계: 독립된 3개 은행이 그룹화를 위해 조직의 재편성을 시행
- 2단계: 완전 자회사가 되는 각 은행의 업무가 중복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
- 3단계: 각 은행이 서로다른 업무를 관장하는 기업 그룹의 형태를 구축

< 회사분할을 활용한 금융기관의 재편성 예 >



○ 시사점

- 국내에서도 금융지주회사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따라, 금융 그룹내 사업 부문별 분할을 통한 경영 효율화가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임

(임진국)